

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록

일 시	2016.5.26.(목) 16:00 - 17:00	장 소	인암동 북합청사(층 강의실)
참석자	9 명(김덕진, 김은영, 박현숙, 배미영, 윤정섭, 윤지영, 이윤하, 최도용, 홍미리)		
회 의 내 용			
<p>○ 회의시작</p> <p>○ ○○○ : 지난 회의 개최 결과 설명 바람</p> <p>○ ○○○ :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권고안에 대하여 인권센터에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권고를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. 그러나 결과는 미수용되었다. 문화체육과의 당초안은 정년을 57세로 규정되는 것이었는데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정년을 60세로 조정하였다. 그러나 권고안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므로 참여 제한을 위해서는 다른 규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권고했는데 권고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정년은 당초보다 조금 늘어나 60세로 규정되었다.</p> <p>○ ○○○ : 다른 질문 사항이 있나</p> <p>○ ○○○ : 결과는 일부수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. 취지를 조금은 받아들인 것 같다.</p> <p>○ ○○○ : 지난 달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 결핵관리 시행 내용에 관하여 논의하겠다.</p> <p>○ ○○○ : 보건소 수가 조례 인권영향평가 시 논의했던 것으로 법무부의 지침을 통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외국인 결핵환자들을 관리하는 내용이 있었다. 법무부에도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도 했는데 결과는 비공개였다. 관련자료를 회의자료에 넣었다. 참고하시면 되겠다.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, 그것을 출입국에 연관지어서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사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거나 비자 연장을 할 때 조건으로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강제출국된다면 현실에서는 결핵 환자들이 더 숨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.</p> <p>○ ○○○ : 검사까지는 할 수 있으나, 치료 비수용자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인권침해성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다.</p> <p>○ ○○○ : 이것이 성북구청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인가</p>			

회 의 내 용
○ ○○○ : 구청과 관련된 것은 보건소가 이 지침에 의해서 결핵환자를 검사를 하고 있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다.
○ ○○○ : 이것은 만약 다투더라도 국가 상대로 해야 하는 것 같다.
○ ○○○ : 이것과 관련해서 성북구에 권고는 안했으나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해야하거기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 본 것이다.
○ ○○○ : 이 지침 자체에 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지 알아보고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자 했던 것 같다.
○ ○○○ : 치료에 비수용하면 강제출국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.
○ ○○○ : 입국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는 퇴거가 가능하다. 출입국관리법 제 11조1항에 보면
○ ○○○ : 이주단체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현장에서 작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. 관련 단체에 있는 분께 여쭙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다고 하였다.
○ ○○○ : 고위험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와 관련이 많은 국가들인 것 같은데 이주노동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시스템인 것 같다. 이것과 관련해서 이주단체 쪽에서 논의하는 없다. 이건과 관련해서 제안해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.
○ ○○○ : 비가시화되어서 더욱 불법체류화되는 경향을 우려해 볼 만한 것 같다.
○ ○○○ : 그렇게되면 강제출국할 명분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.
○ ○○○ : 법무부는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질병을 고치는 것 대신 환자를 계속 관리하는 방식이 좀 아쉬운데 이주단체 쪽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으며,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 확인해봐 주시면 좋겠다.
○ ○○○ : 그것은 확인해보고 추후 보고하도록 하겠다.
○ ○○○ : 인권백서에 관한 내용 보고바란다.
○ ○○○ : 요즘은 2년 보고서라고 말한다. 주요 내용은 2년 동안 했던 일을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, 센터 소개와 인권위원회 활동, 청소년 노동관련 내용, 인권교육, 인권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모아서 정리 할 예정이다.
○ ○○○ :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 공청회에 관한 내용을 보고바란다.
○ ○○○ : 6월에 구의회 상정예정이고 입법예고중이다.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조례 내용에 대한 의견도 마련 할 겸 해서 공청회를 마련하였다. 조례 안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구성되어야

회 의 내 용

할 네트워크에 들어오실 단체들이 다 발표를 한다고 볼 수 있다. 청소년 노동하면 참여를 많이 안하시는 것 같다. 어제 특강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다.

- ○○○ : 작년에는 청소년 또래노동 상담사 양성과정이라고 하였으나, 상담사라고 하면 자격을 인증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과정명을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 지킴이 양성교육과정이라고 명칭을 바꿨다.
 - ○○○ : 청소년 노동특강 같은 경우는 낮 시간대에 해서 참석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다. 누구를 주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것인지.
 - ○○○ : 그것은 행사 시간을 잡을 때 늘 고민이 되는 지점이다.
 - ○○○ : 청소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, 청소년이 참석할 수 없는 시간대였던 것 같다.
 - ○○○ : 그 대상을 청소년만이 아니라 관심있는 분들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낮 시간으로 잡았었다.
 - ○○○ : 주 타겟층과 시간대는 앞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.
 - ○○○ : 보도자료나 전문 고등학교, 특성화 고등학교에 공문을 통해서도 특강이나 공청회 등에 꼭 참여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.
 - ○○○ : 상반기 직원인권교육을 영화감상 '귀향'과 '4등'으로 대신하였다.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서 영화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. 직원인권 교육비로 2백만원은 너무 적다는 권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진행된다.
 - ○○○ : 안건을 마치겠다.
 - 차기회의 일정 : 2016.6.29.(수) 16:00
 - 회의종료
- ※ 회의내용 중 주요논의 및 의견사항에 대해 요약 작성하였음.